

2026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급자제안형 2차)

2026년도 제2차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조달청장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 지정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공공성심사 및 혁신성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이나,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만료일자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하며,
 -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기술로 신청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한(최초 지정기간 3년 만료시점)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면제
-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의 '혁신제품전용물'에 등록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6-19호('26. 1. 30.))

1

대상과제(지정분야) · 지정대상 · 신청자격

□ 지정 분야

- 아래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미래대비 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 금지)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형 모빌리티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농어업 ⑧로봇 ⑨인공지능(AI) ⑩조선·해양 ⑪디지털 신기술(콘텐츠·ICT·소프트웨어)
2. 국민생활문제 분야	①안전 ②환경 ③건강 ④복지 ⑤교육 ⑥문화 ⑦전기차 화재
3. 미래대비 분야	①저출생 ②고령화 ③양육·돌봄 ④탄소중립 ⑤순환경제 ⑥기후변화 대응* ⑦사회적약자 지원 * '기후변화 대응'은 폭염·폭우·혹한 등 기후문제 해결솔루션

□ 지정 대상

- ①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개발완성수준(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有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예)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有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가, 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함(증빙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가.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나.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 단, 벤처나라 등록물품을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신청 시,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까지 허용

< 유의사항 >

1.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제품+서비스 포함)**은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 제안서의 「3 '공공성'의 (7) 규제」 작성 시 **예상되는 규제 요소 및 극복방안 (예: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명확하게 제시
2. 심사 및 지정 제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에 의함)
☞ 신청 제품이 '기 지정 혁신(시)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MAS)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 유형 1,2 다 포함되며, 동일세부품명 동일기술은 규격추가 등으로 신청 가능
☞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핵심기술은 신청 NET(NEP) 및 특허(실용신안)(제안서 「4. 혁신성 - 2)제품의 탁월성 - 3)적용기술」 또는 「2. 제품정보 - 핵심기술 여부」 핵심기술 체크 기준)에 해당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 제안 불가**
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요 물자*는 제안 불가 ☞ *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및 유류

□ 신청 자격

○ 제안제품에 적용된 ①기술의 권리를 보유하고 ②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서,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단독 참여: 제조 설비를 보유한 경우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 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나. 기술권리보유자는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해야 함

- ①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②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NEP)
- ③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신기술(NET)의 기술적용 확인이 완료된 제품

※ 신청 대상은 위 3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특허 등’)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 참여: 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가. 추진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 제품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신제품(NEP)이나 신기술(NET)(이하 ‘특허 등’)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나. 참여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 유의사항 >

1. 특허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 확인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출원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
2.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시, 약정서(공고서 별첨 서식) 제출
3. 1개의 추진기업에 **최대 3개의 참여기업**이 협업 가능

③ 공동수급체 참여 : ‘신산업기술개발제품’에만 해당

가. 참여대상 : ‘신산업기술개발제품’으로 결정된 ①로봇, ②자율주행차, ③소부장 으뜸기업’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참여 허용

※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2조 제17호에 의하여 결정

① (로봇)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준 ‘로봇’ 제품 또는 ‘로봇’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

②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운송수단(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

- 자율주행 기술은 3단계(Level 3) 이상 적용된 제품만 대상

⇒ 로봇,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적용 여부는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 반드시 입증해야 함

③ (소부장 으뜸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으뜸기업으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로 신청한 경우

나. 지정신청 방식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지정신청(‘별지16호’를 지정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특허·실용신안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신제품(NEP), 신기술(NET)의 권리자)는 협정서에 따르며,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

※ 지정신청기업은 ‘협정서’ 제8조의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 비율 기재 요망,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시 반드시 필요)

- 신청자격의 예외 적용 -

1. 제조물품 입찰참가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 기한 내 상기 신청자격의 '①항 가호'와 '②항 나호'에 따른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의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지정 신청 가능
- ☞ 단, 이는 혁신시제품 평가 대상에 포함될 뿐 평가이후 지정 절차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지정신청서 제출과 병행하여 제조물품 입찰참가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절차 추진 필요
- 물품식별번호 미발급 업체는 혁신장터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시 공고에 첨부된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
-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 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

2. 특허·실용신안 권리 등록

- 출원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권리자는 전용실시권자까지만 신청가능(단, 소부장 으뜸기업 신청시 특허요건 면제 가능)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 받은 신제품(NEP),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 받은 신기술(NET)의 기술적용 확인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신청 가능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 ☞ 해당 기술이 출원 중이라 하더라도 '기술이전 업무협약서' 제출로 지정신청 가능. 이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대상에 포함될 뿐이므로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지정 가능
 - * 통상실시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시에만 인정되며, 특허권리자가 공공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공동 기술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함

2

신청 기간 및 추진 일정

□ 신청 기간

○ 접수 마감일시 : 2026. 3. 20. 18:00까지

회 별	신 청 기 간	지 정 분 야
공급자제안 제2차	2026. 3. 3. ~ 2026. 3. 20.	공고서에서 제시한 제안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동일 제안으로 제안분야 다수신청 금지)

※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업로드 과다 및 신청 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대상 - 보완요구 없으니 유의)** ①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공고에 첨부된 지정양식이 아닌 임의양식(카탈로그 포함)으로 제출한 경우, ③ 제안서 또는 규격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

※ **(보완 등 검토)** 신청기간 내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하며,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기간은 별도 통지** 단,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 요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서류 반려)

※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미제출로 간주

※ 자료 작성 및 제출 전 첨부된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일정

○ 최종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 ~ 4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항 목	내 용	세부일정
업체	제안 접수	제안서, 규격서 접수	'26.3.3.~'26.3.20.
조달청	서류 검토	제출 제안서, 규격서 보완	'26.3.23.~'26.4.3.
	혁신시제품 평가	공공성 심사 + 공공성 심사 통과자에 한해 혁신성 심사	'26.4.6.~'26.4.30.
업체 /조달청	2차 서류 제출	기술(특허 등) 적용 여부, 품질 확보 여부, 제조여부 등 확인	혁신시제품 평가 통과 시
조달청	내부 심의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26.5.26.~'26.6.5.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조달정책심의회위원회 심의	'26년 6월 셋째 주 예정

※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경우, 각 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결정

3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혁신장터 → 혁신기업(바로가기 버튼 클릭)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해당공고건 선택 → 신청

4

신청 서류

※ 지정양식은 공고 상세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장터 홈페이지 → 혁신기업(바로가기 버튼 클릭)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해당공고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

- 1차 필수 제출 서류(반드시 모두 제출)

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해당 권리증(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3종, 등록번호별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반드시 제안제품에 적용된 국내특허(실용신안)만 제출

※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권리에 대해 '기술혁신시제품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우수조달물품 지정용 특허적용보고서 등은 불가)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교통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나.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고서 별첨 1)

- 신청기업이 제안하는 품질(성능) 최상값은 혁신시제품 평가 시 중요하게 작용되고, 향후 납품기준으로도 활용 → 작성 시 주의

※ 제안서 제출 시 혁신시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시제품 평가 이후, 제안서를 기반으로 제품규격서(품질기준 등) 최종 확정

다. 혁신시제품 규격서(공고서 별첨 2) ☞ 규격서 내 견본 참조

- 당해 제품의 특징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라. 혁신시제품 신청대상(공고서 별첨 3)

- 신청자의 평가면제 사항 사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 : 해당 없는 자도 양식에 반드시 체크하여 제출

※ '23년 2단계 평가 시행 이후 공공성 심사에 합격하였으나 혁신성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공공성심사는 면제하고 혁신성심사 실시

▣ 유의사항 : 각 첨부파일은 "최대10MB까지만 업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0MB가 초과되는 경우 업로드 불가능하여, pdf 변환 또는 압축하여 업로드 필수

□ 1차 추가 제출 서류(해당할 경우 제출)

가. 특허 등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공고서 별첨 4) 및 모든 권리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 등 출원 중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다. 협업체: 협업승인신청서(공고서 별첨 5)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지정기간 3년을 고려하여 협업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사 제품 중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기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이 있는 경우: 기술·성능 비교표(공고서 별첨 6)

- 비교표에 기존제품 규격서 첨부 필수

- 협업체는 참여기업(제조기업)이 상기내용에 해당할 경우 제출

마. 공동수급체 협정서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6조에 해당하는 신산업기술개발제품(①로봇, ②자율주행차) 또는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하여 공고서의 붙임 (공고서 별첨7)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바.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사유 해당 하는 경우 :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 일정 등급 이상인 제품 등 평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제출서류)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확인서, 사업개시확인서, 확인서 발행기관 공문 등
☞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제출한 제안서가 수요명세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려함을 안내드립니다.

사. 신청제품이 AI제품인 경우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서(공고서 별첨8) 또는 과기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결과서

<혁신시제품 신청한 제품이 인공지능(AI) 분야 제품일 경우 유의사항>

1.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2. 국가기관 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검·인증을 받은 제품 및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검·인증 등을 받은 제품 및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을 혁신시제품으로 등록 권고

3.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 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기하여야 함
4. 법 제32조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여야 함

□ 2차 서류(공공성, 혁신성 심사 모두 합격 업체만 해당)

가. 조달청(조달연구원)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 ‘최종 규격서’

※ 최종규격서는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기술혁신시제품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동 보고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 주의사항 : 우수조달물품용 특허적용확인서는 인정 불가

다.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① 매출원장

-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제출 기준>

-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치 매출원장을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제품의 최초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발행일부턴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매출원장 제출

* 제안서 '㉔ 제품정보-(2)주요성능과 기능-객관적근거' 항목에 기술한 시험성적서 기준

- 단,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매출원장 제출

- 협업체를 구성하여 혁신제품을 신청한 경우에는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모두 매출원장을 제출하여야 함

②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유의사항>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시 제안서 '㉔ 혁신성-㉔ 제품의탁월성-㉔ 적용기술'에 표기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기술혁신시제품 특허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특허 적용 여부 결과, 누락 또는 일부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지정 불가 - 단, 일부적용(개선)은 심의회에서 판단하여 결정)
2.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5

지정절차 및 지정평가

□ 지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검토 → (서류통과업체) 공공성·혁신성 평가 → (합격업체) 2차 서류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시제품이란? 참고

□ 혁신시제품 평가(1차공공성 심사 통과자에 한해 2차혁신성 심사 실시)

- 해당 기업은 공공성 심사와 혁신성 심사 내용을 일괄 대면 발표함
 - 혁신시제품 평가 시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제안서, 규격서)로 발표 및 심사 진행
 - 대면평가 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 기존의 온라인 질의응답 절차는 없음
 - 공공성 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혁신성 심사 진행
 -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 (제출서류)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 * 평가 결과는 평가 익일 혁신장터를 통하여 공개 예정

<전략물자(드론 등) 품질경쟁력 제고 위한 평가 관리강화 안내>

- ※ (드론 평가 관련) 드론의 품질강화 방안으로 혁신시제품 혁신성 심사 시, 평가 현장에서 **실물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업의 제안서 **발표 20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은 15분**으로 진행함.
 - 혁신제품 지정 시, **필수 시험항목을 규격서에 반영**하여야 함
: 경로비행·경로비행시간 등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반영

※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 조회 방법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업체** : 혁신장터 로그인 → 상단 혁신시제품 지정 → 좌측 (업체)지정신청조회 → 평가결과조회 탭 →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
- **그 외: 혁신시제품 평가 합격 확인**
혁신장터 접속 (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 지정합격발표

6

기 타

동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19('26. 1. 30.))」에 따르며, 관련 규정과 공고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문의	혁신조달정책과	042-724-7664, 7420, 7217
신청문의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지원센터	02-6951-4976, 5716, 5143, 4579

별도첨부

- ①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첨 1)
- ② 혁신시제품 규격서(별첨 2-1, 2-2)
- ③ 혁신시제품 신청 대상(별첨 3) ☞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반드시 제출
- ④ 약정서(별첨 4)
- ⑤ 협업 승인 신청서(별첨 5)
- ⑥ 기술·성능 비교표(별첨 6) ☞ 제출 시 기존제품 규격서 반드시 첨부
- ⑦ 공동수급체 협정서 양식(별첨 7)
- ⑧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서(별첨 8)
- ⑨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별첨 9)
- ⑩ 혁신시제품 FAQ(별첨 10)
- ⑪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별첨 11)
- ⑫ 혁신시제품 신청 시 유의사항(별첨 12)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에서 확인

유의사항

- 지정신청하시는 제품이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17조 및 제17조2에 해당하는 ‘심사·지정제외’ 및 ‘심사보류 대상’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지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고2’의 평가면제항목 해당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1단계 - 공공성평가(적부 판정)					
공공적합성	분야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국민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정도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자·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개발완성수준	T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 해소를 충족했거나, 규제 해소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 		
2단계 - 혁신성평가(정량평가) ⇒ 공공성평가 통과업체만 평가대상					
혁신적합성 (50점)	제품의 신규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30점)	시장규모(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문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수행역량(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평가절차 >

○ 1단계. 공공성평가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합격



○ 2단계. 혁신성평가 : 세부항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 통과

참고1

입찰참가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부여 안내

①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제조물품 등록 및 ② 물품식별번호 부여에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은 업체의 준비서류 및 담당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처리기간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목록과

온라인 신청: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805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세부품명번호 10자리 제조물품으로 등록)

- ▶ 콜센터, 조달청 등록팀,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
- ▶ 온라인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세부품명 10자리 제조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문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제조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등록

- 콜센터 1588-0800
- 조달청 등록팀(070-4056-7507, 7189, 7162)
-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

☞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관리과(070-4056-7271, 6463, 7182, 7257)

※ 온라인 신청방법: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 참고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

참고

혁신시제품 평가면제 대상과 면제항목

면제대상 해당 조항	면제대상 내용	면제 항목
제14조 제5항 제3호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Scale-Up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공공성 심사’ 전부 면제
제14조 제5항 제4호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시범구매 연계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 공급자제안형: ‘공공성 심사’ 항목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 수요자제안형: ‘공공성 심사’ 항목 중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제14조 제5항 제5호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으로 신청한 제품	‘공공성 심사’ 항목 중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제14조 제5항 제6호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주민의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중 1년 이내 신청한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공급자제안형: ‘공공성 심사’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 수요자제안형: ‘공공성 심사’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14조 제5항 제7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품	○ 공급자제안형: ‘공공성 심사’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 수요자제안형: ‘공공성 심사’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14조 제5항 제8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혁신성 심사’ 중 ‘혁신적합성’에 해당하는 ‘제품의 신규성’, ‘제품의 탁월성’(해당 면제항목은 만점 부여)
제14조 제5항 제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의1에 따라 운영되는 K-테스트베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혁신성 심사’ 중 ‘시범사용 수행역량’(해당 면제항목은 만점 부여)